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데이터 관련 정부가 수행하는 업무의 효과적 처리를 위해 데이터 전담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「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가 개정(대통령령 제00000호, 2021. 12. 00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5급 2명을 증원하는 등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, 평가대상 정원 19명의 평가기간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, 질병관리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마산병원 및 국립목포병원의 평가대상 정원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행정안전부,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신·구정원대비표 별첨

2) 입법 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6조제6항제13호 중 “질병관리 분야 공공데이터 개방”을 “청 내 공공데이터 제공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제15호 및 제16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4.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

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1조(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)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0과 같다.

별표 5 중 총계 “433”을 “435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432”를 “434”로 하며, 행정사무관·사회복지사무관·보건사무관·의료기술사무관·약무사무관·간호사무관·전산사무관·통계사무관·공업사무관·시설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 “53”을 “55”로 한다.

별표 6 중 총계 “435”를 “437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434”를 “436”으로 하며, 행정사무관·사회복지사무관·보건사무관·의료기술사무관·약무사무관·간호사무관·전산사무관·통계사무관·공업사무관·시설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 “53”을 “55”로 한다.

별표 10 제2호나목1)의 정원의 평가기간란 중 “2021년 12월 31일”을 “20

22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별표 11을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기획조정관) ① ~ ⑤ (생략)	제6조(기획조정관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⑥ 정보통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.	⑥ ----- ----- --.
1. ~ 12. (생략)	1. ~ 12. (현행과 같음)
13. <u>질병관리 분야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</u>	13. <u>청 내 공공데이터 제공</u> --- ----- --
<u><신 설></u>	14. <u>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</u>
14. · 15. (생략)	15. · 16. (현행 제14호 및 제15호와 같음)
제31조(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)	제31조(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)
① <u>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0과 같다.</u>	<u>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0과 같다.</u>
② 「 <u>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</u> 」 제31조제1항에 따라 <u>국립마산병원 및 국립목포병원의 평가대상 정원은 별표 11과 같으며, 그 구체적인 사항은 「책임운영기관의 설치·운영</u>	

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른
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.

신·구정원대비표

■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[별표 5]

질병관리청 공무원 정원표(제27조제1항 본문 관련)

직	급	별	현	행	개	정	안	증	감
총	계		•		•				
			433		435			+2	
일	반	직	•		•				
계			•		•				
			432		434			+2	
•			•		•				
•			•		•				
행	정	사	•		•				
•	사	회	•		•				
•	보	지	•		•				
•	사	사	•		•				
•	의	료	•		•				
•	기	술	•		•				
•	사	사	•		•				
•	의	사	•		•				
•	간	호	•		•				
•	사	사	•		•				
•	전	산	•		•				
•	사	사	•		•				
•	통	계	•		•				
•	사	사	•		•				
•	공	업	•		•				
•	사	사	•		•				
•	무	관	•		•				
•	시	설	•		•				
•	또	는	•		•				
•	보	건	•		•				
•	연	구	•		•				
•	관		•		•				

신·구정원대비표

■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[별표 6]

질병관리청 공무원 정원표(제27조제1항 단서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435	437	+2
일반직 계	434	436	+2
행정사무관 · 사회복지사무관 · 보건사무관 · 의료기술사무관 · 약무사무관 · 간호사무관 · 전산사무관 · 통계사무관 · 공업사무관 · 시설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	53	55	+2